



6·25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

■ 신청기간 2021. 10. 14(목) ~ 2023. 10. 16(월)

■ 신청대상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

※ 비정규군이란
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동안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.

-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ison Office)
-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 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 2. 미국 중앙정보국(Central Intelligence Agency) 첩보부대
 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■ 접수방법

- 우편(등기) 또는 방문 접수(국방부 민원실)
 - 우편 :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,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(우편번호 : 04383)
 - 방문 :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(평일 : 09:00~18:00, 토·일 공휴일 : 미접수)

■ 신청서식 및 서류

- 국방부 홈페이지-비정규군보상위원회에서 다운로드 가능
-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식 출력 가능

■ 기타 문의사항 02-6424-5502 ~ 5505



공로금 신청시 구비서류

공로자(본인)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	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 * 입원, 이민, 기타 사유로 공로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시 공로금 신청 위임장 [별지 제3호서식] 확인기관의 장 확인을 받아 제출 2. 공로자(본인) 주민등록표 초본 1부 *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 4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 *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유족이 신청하는 경우	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 2.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*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 4.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.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신청인 서명서 가. 대표자 1인에게 공로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(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) [별지 제4호서식] *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부 *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(서명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서명 후 서명과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 나. 2명 이상의 신청인이 개인별 공로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(다수신청인 서명서 작성) [별지 제5호서식] *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 *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
보상절차

